#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강유정·박희승·김영배

복기왕 • 이훈기 • 강준현

박지원 · 정을호 · 백승아

박홍근 • 박해철 • 박 정

조 국・송재봉・손명수

서영교・이용우・허 영

오세희 · 김영환 · 이광희

임오경 · 최민희 · 문금주

문대림・양문석・김 현

이기헌 • 위성곤 • 조계원

박홍배 • 민형배 의원

(329])

### 제안이유
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'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'는 「문화기본법」에 '참여와 협치의 원칙'과 '정보공개의 원칙'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문화정책의 수립·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

자 함. 또한 부처·지방자치단체·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 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,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 (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.
- 나.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, 지방자치단체,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(안 제 8조의3 신설).

##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·관리하는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3(문화정책위원회) ①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제8조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제8조의2에 따른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문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
- 3.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
-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 ~ ⑤ (생 략)	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
	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
	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
	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
	나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
	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
	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
	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
	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보유・관리하는 문화
	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
	<u>한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문화정책위원회) ① 문
	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
	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
	문화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
	<u>라 한다)를 둔다.</u>
	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	<u>을 심의한다.</u> 1 게이고세 따르 무취기호 기보
	1. 제8조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
	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- 2. 제8조2에 따른 문화진흥 시 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 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문화정책에 관련된

  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

  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
- ④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)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 람
- 3.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

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

-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수있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